

#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 한국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한국관광공사(이하 “KTO”이라 한다), 대전관광공사(이하 “CVB”라 한다)는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제회의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이하 “유치 추진회의”)의 한국 유치 업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학회”, “KTO”, “CVB” 3자간의 업무 협력관계 체결을 통하여 “유치 추진회의”의 한국 내 유치를 위하여 당 기관들이 상호협력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사항) 본 협약을 통하여 “학회”, “KTO”, “CVB”가 유치하고자 하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명 :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 (40th International Society for Animal Genetics Conference)
2. 행사기간 : 2025.7.21 ~ 2025.7.25. / 5일간
3. 개최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4. 행사규모 : 40개국 총 1,000여명(외국인 520명)
5. 주최/주관 :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6. 협약사항 : 유치 추진회의의 한국 유치와 관련한 각 기관 의무 및 제반사항

제 3 조 (당사자의 의무) ① 각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추진할 업무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회”

1. “학회”는 상기 “유치 추진회의”의 한국 유치를 위한 국내 주최단체로, “유치 추진회의”의 한국 유치를 위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2. “학회”는 “유치 추진회의”의 정보 및 유치를 위한 주요 일정(방한답사, 비딩참가)에 대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한다.
3. “학회”는 “유치 추진회의”의 유치 결정이 종료된 후에도 국제회의의 한국 개최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4. “학회”는 “유치 추진회의”의 유치활동 및 성공여부에 대해 보도자료 등 미디어에 노출 시킬 경우 “공사”와 상호협약하에 공동 유치활동 및 공동유치하였음을 명기해야한다.

#### “KTO”

1. “KTO”는 상기 “유치 추진회의”의 한국 유치를 위해 국제회의 유치지원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KTO”는 해당 국제회의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중대형 국제회의에 준하여 유치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3. “KTO”는 상기 “유치 추진회의”를 ‘유치 유망회의’로 지정하고 “CVB” 및 “학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유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인사를 KOREA MICE 앰버서더로 임명 및 지원할 수 있다.

#### “CVB”

1. “CVB”는 상기 “유치 추진회의”의 대전광역시 유치를 위한 지역 주관단체로, “유치 추진 회의”의 대전광역시 유치를 위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2. “CVB”는 “유치 추진회의”를 대전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당국과 지역 내 관련 사업 단체와 협업을 주관한다.
3. “CVB”는 “유치 추진회의”의 정보 및 유치를 위한 주요 일정(방한답사, 비딩참가)에 대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한다.
4. “CVB”는 “유치 추진회의”의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인사에 대하여 KOREA MICE 앰버서더로 임명하도록 “공사”에 추천할 수 있다.
5. “CVB”는 “유치 추진회의”의 유치 결정이 종료된 후에도 국제회의의 한국 개최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6. “CVB”는 “유치 추진회의”의 유치활동 및 성공여부에 대해 보도자료 등 미디어에 노출 시킬 경우 “공사”와 상호협약하에 공동 유치활동 및 공동유치하였음을 명기해야한다.

제 4 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비밀유지 의무) 각 당사자는 상호 교류를 통해 인지한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누출할 수 없다.

제 6 조 (수정 및 양도) ① 본 협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설정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 7 조 (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비밀유지의무), 제6조(수정 및 양도)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윤리·인권경영) ① 양 당사자는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소속 근로자 개개인의 인격 존중, 차별 금지 등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양 당사자는 반부패·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

제 9 조 (분쟁해결)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10 조 (분쟁해결)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23일



사장 윤성국



회장 이준헌



사장 김장실

